

이사회 의사록

일 시 : 2019년 2월 7일 오전 10시

장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생체연구동 107호 회의실

출석이사 : 총 3명 중 2명

대표이사 심 재현 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제22조에 의한 무보증전환사채의 발행

의장은 회사의 신규 사업, 공장건설 및 사세확장을 위한 자금마련으로 무보증전환사채 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다음과 같은 전환사채 발행에 찬성하여 이를 승인가결하다.

- 아 래 -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퀴럼바이오 제1회 무보증전환사채
2. 사채의 총액 : 금일십억원정 (₩1,000,000,000)
3. 사채의 금액 : 금일십만원정 (₩100,000)
4. 권종 및 수량 : 금일십만원정권 10,000매
5.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7. 사채의 발행일 : 2019.4.5.
8. 사채의 만기일 : 2021.4.5.
9. 사채청약기간 : 2019.2.25.~ 2019.3.22.
10. 사채의 전환청구기간 : 2021.1.1.~ 2021.4.4.
11. 사채금의 납입일 : 2019.3.27
13. 사채의 만기보장수익율 : 년 5%(단리)
14. 사채의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방법 :

전환청구를 하지 않은 사채권자에게 만기보장수익 5%(단리)를 만기가 도래하는 2021년4.5.일날 2개년의 이자 10%와 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5. 추가 금리 : 0%~5%

아래와 같이 추가금리를 퀴럼바이오와 퀴럼바이오헬스케어의 통합재무 제표 매출 기준으로 지급한다.(2년간 매출기준)

| | |
|------------------|----|
| 50억이상 ~ 100억 미만 | 1% |
| 100억 이상~ 150억 미만 | 2% |
| 150억 이상~ 200억 미만 | 3% |
| 200억 이상~ 300억 미만 | 4% |
| 300억 이상 | 5% |

16. 전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채의 인수금액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17. 본 사채의 중도상환권은 있지 않으며, 만기 보유 내지는 주식으로의 전환권만 있는 것으로 한다.

가. 전환 조건

(1) 전환가액 : 20,000원

(2) 각 사채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동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수비율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전환가격의 조정

(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 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기발행 전환사채의 전환은 제외)와 구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 가격(원단위미만 절사)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1 \text{ 주당 발행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단, 회사가 특약에 의하여 정하는 기간까지 본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위 전환가 조정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가 공개시장에 등록된 후,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회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 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 되는 기준 주가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소정 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 위 각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 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 증자 1주당 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주식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나. 전환비율 : 사채권면 금액 100%

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라. 전환청구에 의한 발행해야 할 주식수 : 50,000주

18. 위 상기의 사채는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으로 진행됨으로 날짜가 임의로 조정될 수 있다.

19. 기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부수 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같은날 11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9년 2월 7일

주식회사 퀘림바이오

의장 대표이사 심재현

사내이사 박선정

